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토종닭 자조금 별도 설치 및 자조금의 수급조절 근거 마련〉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9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조금 제도 개요	3
2.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6
3. 자조금의 수급조절 근거 마련	11
4. 참고사항	17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 자조금은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조금 제도 개요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으로, 축산자조금의 법률상 정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임.¹⁾

축산자조금은 현행법상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인 ① 의무축산자조금과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② 임의축산자조금으로 구분됨.

[의무축산자조금 및 임의축산자조금 비교]

구분	의무축산자조금	임의축산자조금
정의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설치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대의원회	설치	미설치
사무국	설치	미설치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

구분	의무축산자조금	임의축산자조금
운용 및 관리 주체	관리위원회	축산단체
품목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7개)	사슴, 양봉 (2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축산자조금 품목(7개)으로는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가 있고, 임의축산자조금 품목(2개)으로는 사슴과 양봉이 있음.

현행법에 따라 의무축산자조금의 거출금은 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0.5% 이내에서 책정되고,²⁾ 정부는 거출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³⁾

이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됨.⁴⁾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3) 「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축산자조금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한우	거출금	15,419	15,606	17,007	18,928	19,441
	정부보조	9,425	9,325	10,279	9,161	9,305
	계	24,844	24,931	27,286	28,089	28,746
한돈	거출금	19,282	20,189	20,425	20,627	20,787
	정부보조	6,150	5,850	5,350	5,350	5,488
	계	25,432	26,039	25,775	25,977	26,275
우유	거출금	6,047	5,995	7,697	7,661	7,514
	정부보조	5,177	5,014	5,003	5,100	5,100
	계	11,224	11,009	12,700	12,761	12,614
계란	거출금	898	946	866	793	1,568
	정부보조	237	385	-	-	-
	계	1,135	1,331	866	793	1,568
닭고기	거출금	92	187	312	1,197	1,335
	정부보조	67	-	-	-	-
	계	159	187	312	1,197	1,335
오리	거출금	1,018	1,346	1,613	1,498	1,284
	정부보조	1,170	1,310	1,440	1,440	1,152
	계	2,188	2,656	3,053	2,938	2,436
육우	거출금	1,087	1,144	1,236	1,243	1,000
	정부보조	978	912	962	970	945
	계	2,065	2,056	2,198	2,213	1,945

※주: (정부보조금) 실집행액 기준 / (농가거출금) 당해연도 거출금(이월액, 예비비 불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소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닭고기의 경우에도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u>육우</u> 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 -----, ----- ----- <u>육우</u> 를, <u>닭고기의 경우에는 토종닭과 육계를</u> ----- -----.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3조에서 소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이는 동일 축산물에 대해 복수의 자조금이 설치될 경우 유사·중복 사업 수행, 운영 비용 증가, 생산자단체 간 이해충돌 등 자원의 분산으로 인한 사업 효과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축산물 단위의 통합적·효율적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닭고기의 경우에도 4개의 축산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가 공동으로 의무자조금인 닭고기자조금 1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용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는데⁵⁾ 토종닭과 육계의 산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자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 196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육계와 비교 시 생산과정에서 성장속도 및 사육형태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맛, 크기, 식감의 차이로 유통경로나 소비방식 또한 달라 육계와 다른 소비촉진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닭의 종류를 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종닭 및 육계 비교]

구 분		토종닭	육 계
품 종		소래, 한협3호, 우리맛닭	코브, 로스, 아바에이커
유통형태		산닭유통 30%(재래시장) 냉장유통 70%	냉장유통
사육농가		447호	1,579호(토종닭 포함)
조사시점 사육두수		4,907천마리('25.9월 기준, 통계청)	73,666천마리('25.9월 기준, 통계청)
주요경로		일반음식점 28% 대규모 중소마트 25%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각16% 등	프랜차이즈 37.3% 일반음식점 11.89% 단체급식소 11.7% 등
사 육 형 태	사육일	70~90일 사육	31~35일 사육
	평균체중	1.8~ 2.3kg	수탉: 1.2~ 1.4kg 암탉: 1.1~ 1.7kg
	회전수	연 3.5회전	연 6회전
외모		다리가 길고 몸매가 날렵함, 가슴살이 얇고 날씬함	허벅지가 두껍고 다리가 짧음 가슴살이 두꺼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재 토종닭은 전체 사육농가(1,579호) 중 약 30%에 해당하는 447호 농가에서 육계의 약 7%에 해당하는 490만 마리('25년 9월 기준)를 사육하는 규모로, 대한양계협회·육계협회⁶⁾ 외에 토종닭협회가

6) 양계협회(1973.6.14.~), 육계협회(1987.6.10.~)

별도로 존재⁷⁾하여 토종닭 생산자 이익 증대 도모 활동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19년부터 양계·육계·토종닭 협회 간 갈등으로 '22년에는 거출률이 6.4%에 그치는 등 장기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⁸⁾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거출률이 약 80%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협회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닭고기자조금 운영 차질 경과]

- 닭고기자조금은 다른 자조금과 달리 이해관계가 다른 4개 단체(양계·육계·토종닭협회, 농협), 계열사 및 농가 참여 등에 따른 이해 상충*
 - * 육계협회는 회원 계열사(13개사)의 자체 홍보사업 운영으로 종계감축, 비축 등 수급조절 중심으로 운영 희망, 양계협회는 소비촉진 중심, 토종닭협회는 별도 자조금 신설 희망 등 단체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함
-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13개) 외에 나머지 계열사(53개)와 비계열 농가의 거출금 납부 미흡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로 육계협회 회원사 중심의 자조금 폐지 요청* 및 대의원회 안건 상정
 - * 육계협회는 참여단체별 조성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 예산분배에 불만, 참여 거부
- 대의원회 개최 결과 폐지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이후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정상화 운영 합의서 등을 통해 자조금 정상화를 도모하였고 '22.9월부터 거출이 재개됨
 - * 닭고기자조금 거출률 : ('22) 6.4% → ('23) 65.5% → ('24) 70.9% → ('25.10월) 8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토종닭과 육계 간 ① 소비방식과 산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 ② 이에 따라 토종닭은 육계와 구분되는 생산자 조직을 형

7) 토종닭협회(2009.1.16.~)

8) 과거에는 (사)대한양계협회(육계 + 산란계)가 가금(닭) 생산자(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였으나, 이후 축종 간 특성 차이 등으로 개별 축종 단체(육계, 토종계)가 설립되었고, 축종 간 특성 및 소비 대상 등이 달라 닭고기 자조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았음.

성하고 있고, ③ 자조금의 사용 목적 및 홍보 대상 등이 상이하여 닭고기 자조금의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 ④ 소고기의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각각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육계 자조금과 토종닭 자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토종닭 자조금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토종닭 거출금은 '24년 고지금액 기준 전체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의 4.2%인 약 8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제한적인 재원 규모 하에서 자조금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상의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4년 닭고기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원, %)

구 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거출율
육 계 (82.8)	1,558,602,418	1,151,103,190	73.9
삼 계 (9.4)	176,830,125	131,314,797	74.3
종 계 (3.6)	68,495,250	1,984,000	2.9
토종닭 (4.2)	79,041,064	50,828,078	64.3
합 계 100%	1,882,968,857	1,335,230,065	70.9

※자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3. 자조금의 수급조절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이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4조⁹⁾는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조 제1항제3호는 자조금을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동안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13.9만 마리의 암소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비육 후 단계적으로 도축¹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도축 장려금을 한우 자조금으로 집행하여 한우의 생산조절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 결과,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사업 시행 전 한우 사육·도축 마릿수 전망치(‘23.6. 전망) 대비 사육 마릿수는 연간 5~10만 마리(2~3%) 감소하였으며, 도축 마릿수는 연간 3~10만 마리(2~10%) 감소하는 등 한우의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되었음.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 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0) 번식용 암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비육이 필요하며, 비육하는 암소는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하기에 비육 순간 생산조절에 기여

[한우자조금으로 실시한 한우 생산조절 사업 현황]

□ 추진 배경

- 한우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 유도를 위해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 추진
 - 한육우수급조절소위원회 및 암소감축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논의 후 한우자조금·한우협회·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 주요 내용

- 2차에 걸쳐 13.9만 마리를 목표로 '20~'23년 동안 암소를 신청·접수받아 일정 기간 비육 후 단계적 도축

대상개체	주관	인센티브	목표	도축 실적
경산우 및 미경산우 (개월령 제한 있음)	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장려금 15~20만원/마리 (자조금 15~20, 농협 0~3) 보증수수료 정액(유상) 사료구매자금 한도 확대 (농식품부)	13.9만마리	13.6만마리 ('24.12월 기준)

□ 한우자조금의 역할

- 한우 송아지 가격 및 도매가격이 높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한우자조금, 농협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 한우자조금은 수급안정적립금*(1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장려금 등으로 '24년까지 암소감축에 174억원 집행
 - * 수급불안상황에 대비하여 농가거출금 일부를 매년 일정액 적립하여 조성

□ 추진 성과

- 암소 선제적 감축으로 수급여건 크게 호전
 - 최근 전망과 과거 전망치 대비 : (사육) 연간 5~10만↓, 2~3%↓ / (도축) 3~10만↓, 2~10%↓

사육전망 변화 추이(만마리, KREI)



도축전망 변화 추이(만마리, KREI)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정책만으로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 사용 용도인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조절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함께 의무자조금 단체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자조금 사업의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촉진 활동 등과 수급조절 작용의 병행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작 및 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¹¹⁾

1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낙농진흥법」은 낙농진흥회로 하여금 매년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유제품의 구매,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생산자 자조조직의 자율적 수급안정 방법 및 절차를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음.¹²⁾

다만,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 승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행범위·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안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¹³⁾의 자문과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낙농진흥법」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구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관련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6.7.23. 시행예정)에 따라 한우의 수급조절과 관련한 사항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의 기준가격
4.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5.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6. 자원 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7.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참고사항

개정안과 같이 ①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②자조금단체의 수급 조절 근거 마련을 포함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676호)」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5.2.18.)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축산자조금 개요

-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사업대상자 :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등
-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등
- 지원조건 : 민간보조 50%(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 매칭 지원)
- 자조금 현황(한우 등 9개 품목)
 - 의무자조금 : 한우('05), 한돈('04), 우유('06), 계란('09), 닭고기('09), 오리('15), 육우('14)
 - 임의자조금 : 사슴('07), 양봉('09)
- 거출단가
 - 단가(마리당) : 한우(2만원), 한돈(1,100원), 우유(3원/ℓ 당), 계란(80원), 닭고기(5원), 오리(20원), 육우(15천원)
 - * 임의자조금은 농가, 단체, 계열업체, 사육규모, 품종 등에 따라 거출단가가 상이함
 - * 거출금의 한도: 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
- 거출금 수납기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2

축산자조금 설치단체 현황

1) 의무자조금 설치단체

자조금위원회명	축산단체명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한돈협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오리협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농협

2) 임의자조금 설치단체

자조금위원회명	축산단체명
-	한국양봉협회
-	한국사슴협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